

## 직무관련성 심사·결정서

신청인	성명	소속	직위	직급 등
결정주문				
결정이유		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5제7항 및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

청인

○ ○ ○ 귀하

### 작성방법

<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'직급 등' 란 작성방법>

-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·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. [예: 고위공무원 가등급]
-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(외무공무원의 경우)을 적으십시오. [예: 서기관, 8등급]